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대통령령 제 호, 2024. . . 공포, 2024. . .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2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제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	--

별지 제21호의2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	--

제2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제3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4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담당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5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	--

별지 제2호의5서식 앞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	--

제6조(「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제7조(「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제8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의 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 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제9조(「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0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의 붙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붙임서류	1. 기업 등의 제대군인 고용 실적 및 현황 2.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서 등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업 등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제1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제12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하고, 같은 쪽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대한 정보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동의합니다”를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3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4466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연 락 처	(044) 202 - 573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2258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5544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3227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연 락 처	(044) 200 - 586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4 - 7360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3) 719 - 7132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연 락 처	(02) 397 - 7347